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025. 9.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목 차

I	제안개요	1
II	세입·세출 예산 총괄	2
	① 총괄 현황	2
	② 세입예산(재원)	3
	③ 세출예산	3
III	일반회계	4
	① 총괄 현황	4
	② 세입 예산	4
	③ 세출 예산	5
IV	종합 검토 결과	14

2025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제안 개요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4일(목), 마포구청장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8. 28.(목) ~ 9. 1.(월)

☐ 예산결산위원회 회부일자

- 2025. 9. 2.(화)

☐ 위원회 회부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Ⅱ 세입·세출 예산 총괄

1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¹⁾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53,857,126	934,603,184	19,253,942	2.06%
일 반 회 계	912,230,859	892,976,917	19,253,942	2.16%
특 별 회 계	41,626,267	41,626,267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837,759	837,759	0	0.00%
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	7,314,916	7,314,916	0	0.00%
주 차 장	28,982,562	28,982,562	0	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614,851	614,851	0	0.00%
건 축 안 전	826,179	826,179	0	0.00%
화 력 발 전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050,000	3,050,000	0	0.00%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2억 5,394만 2천 원(2.06%)이 증가한 9,538억 5,712만 6천 원임.
- ▶ 일반회계: 9,122억 3,085만 9천 원(192억 5,394만 2천 원 증가)
 - ▶ 특별회계: 416억 2,626만 7천 원(증감액 없음)

1) 기정액: 2025. 7. 29. 기준 (2025년도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1~15차 간주예산)

2

세입예산(재원)

※ 증감액(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액)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²⁾	조정교부금 ³⁾ (가산교부)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 반환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⁴⁾
합 계	19,253,942	52,128	3,367,000	5,834,814	0	0	0	0	10,000,000
일 반 회 계	19,253,942	52,128	3,367,000	5,834,814	0	0	0	0	10,000,000
특 별 회 계	0	0	0	0	0	0	0	0	0
의 료 급 여 금	0								
마 농 수 산 포 물 창	0								
주 차 장	0								
발 전 소 지 변 지 원 사 업	0								
건 축 안 전	0								
화 력 발 전 자 원 설	0								

3

세출예산

※ 증감액(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액) 기준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합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예비비
19,253,942	1,673,972	16,457,469	1,122,501

○ 일반회계 세출내역

- ▶ 자체사업 : 16억 7,397만 2천 원
- ▶ 보조사업 : 164억 5,746만 9천 원
- ▶ 예 비 비 : 11억 2,250만 1천 원

2. 특별회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편성내역 없음.

- ▶ 기정액(416억 2,626만 7천 원)과 동일

2) [행정지원과]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 수입 52,128천원(67,875원*10실*2개소*60일*64%)

3) [예산정책과] 2025년도 서울시 추경에 따른 조정교부금 가산교부(2024년도 결산차액)

4) [예산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구비분 확보)

Ⅲ 일반회계

1 총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912,230,859	892,976,917	19,253,942	2.16%

-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22억 3,08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8,929억 7,691만 7천 원 대비 2.16%인 192억 5,394만 2천 원이 증가함.

2 세입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 반환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일반회계	19,253,942	52,128	3,367,000	5,834,814	0	0	0	0	10,000,000

○ 세입편성

- ▶ 세외수입(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 : 5,212만 8천 원
-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가산교부) : 33억 6,700만 원
- ▶ 보조금 : 58억 3,481만 4천 원
- ▶ 예수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00억 원

3 세출 예산

1. 조직별 세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912,230,859	100.00%	892,976,917	100.00%	19,253,942	2.16%
새 마 포 담 당 관	550,269	0.06%	550,269	0.06%	0	0.00%
감 사 담 당 관	179,053	0.02%	179,053	0.02%	0	0.00%
행 정 지 원 국	216,756,166	23.76%	207,324,862	23.22%	9,431,304	4.55%
복 지 동 행 국	348,403,808	38.19%	347,230,276	38.88%	1,173,532	0.34%
교 육 체 육 국	150,934,102	16.55%	145,031,032	16.24%	5,903,070	4.07%
관 광 경 제 국	33,795,230	3.70%	33,795,230	3.78%	0	0.00%
재 정 관 리 국	11,775,608	1.29%	10,653,107	1.19%	1,122,501	10.54%
환 경 녹 지 국	73,937,978	8.11%	73,937,978	8.28%	0	0.00%
도 시 관 리 국	2,218,245	0.24%	2,218,245	0.25%	0	0.00%
교 통 건 설 국	35,524,856	3.89%	35,324,856	3.96%	200,000	0.57%
보 건 소	32,721,060	3.59%	31,297,525	3.50%	1,423,535	4.55%
구 의 회	5,434,484	0.60%	5,434,484	0.61%	0	0.00%

2. 기능별 세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912,230,859	100.00%	892,976,917	100.00%	19,253,942	2.16%
일 반 공 공 행 정	81,998,343	8.99%	72,867,479	8.16%	9,130,864	12.53%
공공질서및안전	14,425,823	1.58%	14,425,823	1.62%	0	0.00%
교 육	15,052,781	1.65%	15,052,781	1.69%	0	0.00%
문 화 및 관 광	36,216,077	3.97%	36,192,667	4.05%	23,410	0.06%
환 경	58,464,615	6.41%	58,464,615	6.55%	0	0.00%
사 회 복 지	480,129,016	52.63%	472,778,566	52.94%	7,350,450	1.55%
보 건	25,594,137	2.81%	24,170,602	2.71%	1,423,535	5.89%
농 립 해 양 수 산	2,311,363	0.25%	2,311,363	0.26%	0	0.00%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9,272,587	1.02%	9,272,587	1.04%	0	0.00%
교 통 및 물 류	15,857,911	1.74%	15,657,911	1.75%	200,000	1.28%
국토및지역개발	12,735,417	1.40%	12,735,417	1.43%	0	0.00%
예 비 비	6,120,405	0.67%	4,997,904	0.56%	1,122,501	22.46%
기 타	154,052,384	16.89%	154,049,202	17.25%	3,182	0.00%

3.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행정지원국

○ 세출예산액은 2,167억 5,616만 6천 원

(기정액 대비 4.55%인 **94억 3,130만 4천 원 증액**)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16,756,166	207,324,862	9,431,304	4.55%
행 정 지 원 과	141,915,687	141,615,247	300,440	0.21%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신규)	300,440	0	300,440	순증
자 치 행 정 과	63,222,035	54,091,171	9,130,864	16.88%
[매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신규) <국75%, 시15%, 구10%> - 국비: 1차분 교부완료(2차분 8월예정) - 시비: 9월 교부예정 *특별조정교부금은 매칭비율 제외	51,347,128	42,216,264	9,130,864	21.63%
국	42,164,610	42,164,610	0	0%
교*	51,654	51,654	0	0%
구	9,130,864	0	9,130,864	순증

-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을 위한 시설임차료, 예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총 3억 44만 원을 신규 편성함. 이는 휴양소 운영방식이 변경(조성→임차)됨에 따라 구민에게 여가 서비스를 연내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임. 다만, 운영방식 변경 사유, 임차시설 선정 방식, 휴양소 후보지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⁵⁾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56조⁶⁾는 주민에게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휴양소 운영은 주민 이용료 징수와 직결되는 사안인

5)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6)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큼. 따라서 본 사업은 다음번 구의회에서 「구민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칭)」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휴양소 추진 과정은 건립 추진 → 계획 취소 → 임차 전환으로 이어져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정 신뢰성 저하, 절차적 정당성 미흡, 재정 낭비 우려 등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향후에는 조례 제정, 주민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여 구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마포구민 휴양소 추진경위

- '24. 3. 8. :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 TF 운영 계획 수립
- '24. 5. 28. :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 대상부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4. 9. 5. :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 계획 수립
- '24. 9. 11. : 공유재산심의회 '취득' 심의(원안의결)
- '24.10. 14. : 제271회 임시회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마포구민휴양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건립계획)
- '25. 2. 18. : 마포구민 휴양소(장봉리 산 9) 건립 취소 계획
- '25. 3. 17. : 공유재산심의회 '취득취소' 심의(원안의결)
- '25. 4. 25. : 제275회 임시회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마포구민휴양소 건립 재산 취득 취소)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1차 교부된 국비 421억 6,461만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165만 4천 원은 제14차 간주 예산으로 처리되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구비분(1~2차 모두 포함) 91억 3,086만 4천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부대비용(기간제근로자 급여, 전산장비 임차료, 상품권·선불카드 발행비용, 홍보운영비 등)으로 편성함. 한편, 시비는 9월 교부예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간주예산으로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과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어 자치구의 재량은 제한적임. 따라서 마포구는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홍보와 관리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 완화, 지역경제 환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복 지 동 행 국

○ 세출예산액은 3,484억 380만 8천 원

(기정액 대비 0.34%인 11억 7,353만 2천 원 증액)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48,403,808	347,230,276	1,173,532	0.34%
실 뿌 리 복 지 과		86,411,943	86,314,593	97,350	0.11%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신규)	97,350	0	97,350	순증
장 애 인 복 지 과		53,830,158	52,757,158	1,073,000	2.0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3,046,202	2,180,202	866,000	39.72%
	시각장애인경로당 조성(신규)	207,000	0	207,000	순증
가 족 정 책 과		35,398,745	35,395,563	3,182	0.01%
[매칭]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168,332	165,150	3,182	1.93%
	균	64,770	64,770	0	0%
	시	19,436	19,436	0	0%
	구	84,126	80,944	3,182	3.93%

- 마포형 실뿌리 복지전달체계(1동 1실뿌리복지센터) 구축을 위한 노고산실뿌리 복지센터 조성사업 9,735만 원을 신규 편성함. 이는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구, 노고산어린이집) 공용부(계단, 화장실 등)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설계용역비 2,200만 원, 공용부 리모델링 등 공사비 7,535만 원을 편성함.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시설 개선(외벽 도색, 간판 제작) 예산 21,800천 원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편성한 바 있음에도, 다시 제2회 추경에서 공용부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는 추경 편성의 원칙(긴급성·불가피성)에 적합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어린이 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에 부여한 무상사용수익권과 관련하여 마포세무서가 해당 시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⁷⁾으로 통보한 데 따른 것임. 이에 따라 현 시점 기준 최근 5년간(시효 경과분 제외)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66,000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납부기한은 2025년 11월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17,037천원) 추가 및 납부지연가산세(납부완료 될 때까지 매일 124,939원)가 발생됨. 또한, 2026년 1월에는 체납처분 절차 진행 예정이므로 적시 예산편성이 필요함.
- 비록 해당 건물이 2015년에 준공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2019.12.23.) 이전이라 집행부의 예측 한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2014년부터 유사한 과세 분쟁⁸⁾이 제기된 바 있어 법령·타 지자체 사례·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미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 추진 전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세무 자문을 거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7) 시설물을 무상사용 수익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엔 과세대상에 포함)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9-18-8(기부채납 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8) 국세신문(2014.11.13.) 보도자료 : 시설물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61>)

■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9-18...8 【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 신규사업인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2억 700만 원을 편성함. 이는 마포장애인복지회관 7층 옥상 휴게공간 및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경로당(41.37㎡) 및 화장실(12㎡)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92,000천원과 물품취득비 15,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해당사업의 수혜대상이 시각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또한,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금년 내 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신규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과 동시에 2차 추경에 중복 편성된 점이 지적되었음. 집행부는 추경안 제출(2025.8.14.) 이후 특별교부금 교부가 확정(2025.8.18.)됨에 따라 추경 편성 금액의 삭감을 요청하였음. 사업의 시급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부금 신청과 추경 편성을 병행한 집행부의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교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이는 곧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확정 이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료 부담금 등)로 구비 31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함. 이는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024년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 및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상분(임금 2,870천원, 4대보험료 312천원)을 반영한 것임.

교 육 체 육 국

- **세출예산액은 1,509억 3,410만 2천 원**
(기정액 대비 4.07%인 **59억 307만 원 증액**)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50,934,102	145,031,032	5,903,070	4.07%
보 육 정 책 과	109,749,503	103,869,843	5,879,660	5.66%
[매칭] 0~2세 보육료	30,780,080	24,900,420	5,879,660	23.61%
체 육 진 흥 과	13,651,470	13,628,060	23,410	0.17%
[매칭]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신규)	23,410	0	23,410	순증

- **0~2세 보육료 지원사업** 58억 7,966만 원을 증액 편성함. 이는 0~2세 보육료 지원(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2025년 7월부터 실시된 교육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5%)을 반영한 것임. 이 사업은 부모 및 기관(어린이집)에게 제공되는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국·시·구비 총 307억 8,008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를 통해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재원비율: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 다만, 지원 단가 인상이 실제로 현장의 보육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단가 보전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시설 환경 개선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구비 부담이 점차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국·시비 재원 확보 방안과 더불어, 구 차원에서의 맞춤형 보육지원(예: 시간제·긴급 보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 2,341만 원을 신규 편성함. 이는 신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의 구비분을 먼저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는 8월 중 교부 예정임. 이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의 10% 상당의 인원에게 지원(1회 5만원,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 비율은 국(기금) 70: 시 15: 구 15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구비분 2,341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함.
- 다만, 지원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수요에 비해 체감 효과가 낮을 수 있음.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여 미신청·미수혜자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 할인 ▲민간 체육시설과의 제휴 프로그램 확대 등을 모색한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어르신 건강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재 정 관 리 국

○ 세출예산액은 117억 7,560만 8천 원

(기정액 대비 10.54%인 11억 2,250만 1천 원 증액)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1,775,608	10,653,107	1,122,501	10.54%
예 산 정 책 과	6,947,416	5,824,915	1,122,501	19.27%
예비비	6,120,405	4,997,904	1,122,501	22.46%

- 예산정책과 일반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11억 2,250만 1천 원 증액 편성함.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비용 발생 등 향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함임.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잔액을 법적 기준에 맞게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교 통 건 설 국

○ 세출예산액은 355억 2,485만 6천 원 (기정액 대비 0.57%인 **2억 원 증액**)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5,524,856	35,324,856	200,000	0.57%
도 로 개 선 과	16,090,449	15,890,449	200,000	1.26%
도로 정비공사	3,503,440	3,303,440	200,000	6.05%

-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예산 2억 원이 증액 편성됨. 여름철 집중호우⁹⁾ 등으로 도로파손 구간 정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479만 3천원이며, 향후 동절기 강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 건 소

○ 세출예산액은 327억 2,106만 원

(기정액 대비 4.55%인 **14억 2,353만 5천 원 증액**)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2,721,060	31,297,525	1,423,535	4.55%
건 강 동 행 과	24,593,613	23,170,078	1,423,535	6.14%
[매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66,178	230,727	135,451	58.71%
[매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576,169	1,288,085	1,288,084	100.00%

- 국(기금)·시·구비 매칭 보조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1억 3,54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함. 기존 본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25.5.1.부터 검사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재개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국비, 시비) 매칭을 위한 구비를 편성하는 것임.

*재원비율: 국비(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9) '25. 7. 14. ~ 20. 간 260mm의 집중호우 기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12억 8,8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함.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백신 구매 재원이 2025년부터 국비(기금) 100% 지원에서 지방비(시비, 구비) 매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구비분 편성임.

*재원비율: 국비(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IV 종합 검토 결과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46억 318만 4천 원 대비 192억 5,394만 2천 원(2.06%) 증가한 9,538억 5,712만 6천 원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총 192억 5,394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자체사업으로 16억 7,397만 2천 원, 보조사업으로 164억 5,746만 9천 원, 예비비로 11억 2,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함.
*특별회계 규모는 총 416억 2,626만 7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편성액은 없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구민 후생복지 증진 ▲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및 건강증진 지원 ▲ 긴급 행정수요 대처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91억 3,086만 4천 원, 0~2세 보육료 58억 7,966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3,545만 1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12억 8,808만 4천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억 원, 일반예비비 11억 2,250만 1천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3억 44만 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9,735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8억 6,600만 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2억 7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구비분) 2,341만 원 등을 편성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특히, 주요 편성 항목인 정부 주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편성된 일부 사업(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은 시설비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기대 효과 분석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사업**은 도심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 휴양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특히 건립 대비 임차 방식은 초기 비용 절감과 시범운영을 통한 정책 효과 검증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주민 이용료 징수와 직결되는 공공시설 운영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반드시 조례 제정 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선(先) 반영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재정통제권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따라서 반드시 조례 제정 이후 집행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신규사업 추진 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또한,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건은 무상사용수익권이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된 데 따른 불가피한 추경 사례임. 그러나 사전 법리 검토와 세무 관리 체계 미흡이 드러난 만큼 행정적 보완이 요구됨. 향후에는 과세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법률 자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편성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TF 관련 용역¹⁰⁾을 활용하여 환급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고, 자료 관리 및 전문가 자문을 강화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노원구¹¹⁾가 최근 5년간 약 50억 원을 환급 받은 사례는 참고할 만함.

- 한편, 세입 재원으로 활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상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276회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5.6.18.(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관리국)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한 TF 구성 관련 용역비 신규편성(재무과): 2,200만 원(홍지광 의원)

11) 헤럴드 경제 보도(2025.6.18.) : 부가가치세 5년간 50억 환수, 건물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000만 원 환급 등 5년간 50억원 부가세 환급 받아내 ...기존 업무방식을 탈피 선제적 모니터링과 체계적 자료 관리로 실현한 적극행정 성과...오승록 구청장 이 팀장에 인센티브 제공 뜻 밝혀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11669?ref=naver>)